



2024년 1월 10일(수)
이 장 회 의

이 장 회 의 자 료



하 동 읍

• 목 차 •

[총무부서]

1.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수요조사 안내 1
2.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
3. 하동군립예술단 창단 기념 『2024 신년음악회』 개최 안내 2
4.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안내 3

[맞춤형복지부서]

1. 2023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안내 4
2. 설명절 맞이 위문품 지원대상자 추천 5
3.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액 안내 5
4. 새마을남여지도자 및 경로당회장 변경사항 통보 6

[산업경제부서]

1. 길고양이 중성화(TNR) 수술비 지원 신청 안내 7
2. 2024년 농업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7
3.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8
4. 2024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8
5.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8
6. 매실 돌발해충(복숭아씨살이좀벌) 피해 조사 안내 9
7. 2024년 농산물우수관리(GAP) 기본교육 수요조사 안내 10

[재무부서]

1.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11

[민원부서]

1.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12
2.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협조 12

총무부서

1.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수요조사 실시 안내

(하순냥 880-6006)

- 사업명: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 또는 부속, 독립된 슬레이트 건축물(창고, 축사 등)
- 지원범위
 -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·제거·운반·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(주택만 해당)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 -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,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·처리비는 본인 부담
- 지원기준

구분	주택슬레이트 철거	비주택 슬레이트 철거	주택 지붕개량
건축용도	주택(부지내 부속건물 포함)	200㎡ 이하 창고·축사	슬레이트 철거대상 주택
지원기준	· 취약계층 : 전액지원 · 일반계층 : 최대 352만원	200㎡ 이하 전액지원	· 취약계층 : 최대 1,000만원 · 일반계층 : 최대 300만원

※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침 미확정으로 인해 차후 지원 기준 및 금액 변동 가능

- 지원 우선순위: ① 기초수급자, ② 차상위계층, ③ 기타 취약계층(한부모, 다자녀, 독거노인 등), ④ 연계사업대상자(빈집정비사업, 도시재생사업 등)
- 신청기간: 2024. 1. 8.(월) ~ 2024. 2. 7.(수)
 - ※ 위의 신청기간 이후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가능
- 접수방법: 읍사무소 총무부서 방문 신청
- 제출서류: 사업 신청서 1부, 건축물대장 1부, 건축물 사용 승낙 및 위임서(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) 1부, 자격해당 증빙서류(기초·차상위 등에 해당될 경우) 1부

2.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

(하순남 880-6006)

- 사업명: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
- 신청기간: 2024. 1. 8.(월) ~ 2. 8.(목)
- 지원시설: 철선 울타리(전기 울타리 불가)
- 지원규모: 농가당 최대 500만원(보조금 80%, 자부담 20%)
- 지원대상: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·임업·어업인, 시설 설치사업비(자부담금 20%)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
- 지원제외: 농림부의 FTA기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,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포기자
-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 1부,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1부,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1부, 토지소유권 입증서류(토지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등) 1부 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(임대경작자인 경우), 농업(어업·임업)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, 신청농지 자구노력 입증 사진(신청농지에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) 1부 ※ 사업신청서 서식은 총무부서내 비치
- 신청방법: 하동읍사무소 총무부서 방문 신청

3.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안내

(박후란 880-6005)

- 추진배경: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(2023. 12. 15.)에 따라 '24.1.1.(월)부터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 종료
- PCR검사 방법 안내
 - 일반의료기관에서 PCR검사 희망시 사전에 유선 문의 후 방문
 - PCR 무료검사 대상: **【붙임 1】** 참고

〈하동군 PCR 검사 가능 의료기관〉

연번	병원명	진료시간	주소	전화번호
1	하동중앙의원	월~금 9:00~18:00 토 9:00~12:00	하동읍 연화길 6	055-883-0222
2	하동군민여성의원	월~금 8:30~17:00 토 8:30~12:00	하동읍 중앙로 115	0507-1373-7770

○ **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**

- 신분증 지참하여 **보건소 2층 보건정책과 방문/발급 가능**

※ **읍·면사무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중단**

4 하동군립예술단 창단 기념 『2024 신년음악회』 개최 안내

(박후란 880-6005)

○ 일 시: 2024. 1. 11.(목) 11:00시

○ 장 소: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

○ 주요내용

- 국악, 서양 음악의 악기 구성으로 다채로운 퓨전 음악 공연

- 하동초등학교 관악부 협연 및 트럼펫, 성악 협연 신년 희망의 곡 연주

○ 협조사항: 홍보 및 이장·마을주민 등 행사 참석 협조

맞춤형복지 부서

1. 2023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안내

(황 선 880-6042)

- 제출기한: 2024. 1. 19.(금)일한
- 정산대상: 관내 경로당 43개소
- 대상사업: 2023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방비, 난방비
- 지출과목

구분	세목	과목 설명
냉난방비	냉·난방비	-냉방비 : 냉방기 사용 전기요금(7~9월) ※ 집행잔액-반드시 반납 -난방비 : 경로당 보일러 연료 및 심야전기 보일러 사용 요금 ※ 냉난방기 구입 절대불가, 냉방기 및 보일러 수리는 가능
운영비	공공요금	전기·상하수·가스·분뇨수거비,물탱크청소비,신문,잡지,유선시청료 등
	사무비	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: 장부, 필기구, 인쇄비, 소모품비 등
	물품구입	경로당 회원을 위한 물품 구입 -휴지, 음료수, 라면, 양념, 커피, 차, 우유, 부탄가스, 거울, 건전지 등
	회의비	총회, 이사회, 월례회의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- 다과, 음료 등 물품구입비(음식점 등에서의 단체회식비 불가)
	기타 운영비	- 경로당 부담금(연회비) -소형 가전제품 구입 : 밥솥, 가습기, TV, 전기장판, 선풍기, 가스렌지 등 -운동기구, 오락기구 구입 : 헬스자전거, 한궁, 족욕기, 노래방기기, 장기, 비둑 등
	경로당 개보수	간단한 수리 및 설치비용 : 유리, 형광등, 장판, 도배, 지붕, 하수구, 물탱크 밸브, 싱크대, 방충망, 열쇠, 전구, 안전가스밸브, 경로당명판 등

- 유의사항
 -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는 **회수 조치**
 -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**반납 처리**
- 제출서류
 - 정산 보고서(운영비, 냉방비, 난방비)
 - 증빙서류(날짜별 영수증), 통장사본 등

2. 설명절 맞이 위문품 지원대상자 추천

(류승철 880-6048)

- 목 적: 설명절을 맞이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읍민을 위문함으로써 더불어사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
- 추천기한: 2024. 1. 24.(수)까지
- 추천인원: 마을별 3가구
- 추천서식

순위	마을명	대상자		전화번호	비고
		이름	생년월일		
1					
2					
3					

3.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액 안내

(변정해 880-6043)

- 기준중위소득이란: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
- 기준중위소득 (단위: 원/월)

가구원수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 소득	23년	207만7,892	345만6,155	443만4,816	540만964	633만688	722만7,981
	24년	222만8,445	368만2,609	471만4,657	572만9,913	669만5,735	761만8,369

- 급여별 선정기준액 (단위: 원/월)

가구원수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생계 (중위 32%)	23년	62만3,368	103만6,846	133만445	162만289	189만9,206	216만8,394
	24년	71만3,102	117만8,435	150만8,690	183만3,572	214만2,635	243만7,878

의료 급여 (중위 40%)	23년	83만1,157	138만2,462	177만3,927	216만386	253만2,275	289만1,193
	24년	89만1,378	147만3,044	188만5,863	229만1,965	267만8,294	304만7,348
주거 급여 (중위 48%)	23년	97만6,609	162만4,393	208만4,364	253만8,453	297만5,423	339만7,151
	24년	106만9,654	176만7,652	226만3,035	275만358	321만3,953	365만6,817
교육 급여 (중위 50%)	23년	103만8,946	172만8,077	221만7,408	270만482	316만5,344	361만3,991
	24년	111만4,222	184만1,305	235만7,328	286만4,956	334만7,867	380만9,184

○ 협조사항: 복지사각지대 및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

4. 새마을남여지도자 및 경로당회장 변경사항 통보

(황 선 880-6042)

○ 마을 단위 복지관련 단체장 변경시 통보: [연중 수시](#)

○ 통보서식

직책	성명	주소(마을)	연락처	변경일자
새마을부녀회장				
새마을지도자				
경로당회장				

산업경제 부서

1. 길고양이 중성화(TNR) 수술비 지원 신청 안내

(김수진 880-6014)

- 신청기한: 2024. 1. 17. (수) 한
- 사업량: 150마리
- 대상지역: 길고양이 밀집 서식지(마을단위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)
- 지원단가: 마리당 20만원
- 사업내용: 길고양이 포획 → 중성화수술 → 방사
- 우선순위
 - 신청자(캣맘 등)가 길고양이 포획에 협조 가능한 지역
 - 집단서식지(10마리 이상)
 - 가구 수가 많은 지역 및 전통시장
- ※ 사업 시행 중 대상 지역의 길고양이가 포획이 불가할 경우 후순위 실시

2. 2024년 농업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

(김수진 880-6014)

- 신청기한: 2024. 1. 18. (목) 한
- 지원대상: 농업인 자녀 중 가업 승계한 40세 이하 농업인
- 사업량: 2농가
- 지원금액: 30,000천원(보조 15,000, 자담 15,000)/ 1농가당
- 지원내용: 시설현대화, 가공산업 등

3.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

(김수진 880-6014)

- 신청기한: 2024. 1. 19. (금) 한
- 사업대상
 - 청년농업인: 「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
 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 (농업회사법인 제외)
 - * 단,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함.
- 사업내용: 청년농업인의 초기 창농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사업 공모형태 지원

4. 2024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

(김수진 880-6014)

- 신청기한: 2024. 1. 19.(금) 한
- 사업대상: 2014.12.31.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등
- 사업내용: 축사, 축사시설, 축산시설 등 신축과 개보수 등
- 지원형태
 - 재원비율: 용자 80%, 자부담 20%
 - 이 자 율: 중·소규모 연리 1%(대규모 2%), 5년 거치 10년 상환

5.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

(유수연 880-6013)

- 신청기한: 2024. 1. 19.(금) 한 ※ 이후 신청 불가
- 신청대상: 난방용 등유·LPG 보일러 주사용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지원액: 세대당 최소 136,100원 ~ 최대 592,000원

구분		지원금액		이용권 형태
		지원단위	지원금액	
기초생활수 급자	에너지바우처 수급자(세대)*	1인	343,800원	실물카드 (기존발급 하나카드 또는 선불카드)
		2인	256,600원	
		3인	136,100원	
		4인 이상	0원	
	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(세대)	세대	592,000원	
차상위계층		세대	592,000원	실물카드

- 신청방법: 읍사무소 산업경제부서 전화(☎055-880-6013)/방문 신청
- 지원제외
 - 2023년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(세대)
 - 도시가스 사용 세대
 - '23년 긴급복지지원금(동절기 연료비) 수급자(세대)
 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 -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

6 매실 돌발해충(복숭아씨살이좀벌) 피해 조사 안내

(유수연 880-6013)

- 신청기한: 2024. 1. 26.(금) 한
- 조사작목: 매실
- 대상지목: 전, 답, 과수원(산지 제외)
- 신청서식

성명	농지주소	지목	면적(m ²)
		전/답/과수원	

- 유의사항
 - 경영체에 없는 필지도 신청할 수 있으나, 약제 지원은 불가
 - 2023년 12월 조사 시 기신청한 필지는 신청 불필요
 - 미신청 시 약제 지원 불가하므로 피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

7 2024년 농산물우수관리(GAP) 기본교육 수요조사 안내

(유수연 880-6013)

- 신청기한: 2024. 1. 31.(수) 한
- 교육대상: GAP 신규·갱신 인증 농가
 - ※ GAP 기본교육은 신규인증을 위한 사전조건이며, 기존 인증자는 2년마다 교육 갱신
- 교육시기: 2024. 4월 ~ 5월 중
- 교육방법: 집합교육(2시간)
- 교육내용: GAP 제도 및 PLS의 이해
- 신청서식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

재무부서

1.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

(박민지 880-6033)

- 개요: 6월과 12월 납부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 시 연세액의 4.6% 감면
- 신청 및 납부기한: 2024. 1. 2. (화) ~ 2024. 1. 31.(수)
 - ※ 납기 후, 수납 불가하며 연납신청도 자동 해제
- 신청방법: 읍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, 위택스(www.wetax.go.kr)로 신청 가능
- 납부방법: 고지서 납부, 계좌이체, 신용카드(방문 또는 위택스)
 - ※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음
- 연납신청 및 공제율 현황

연납구분	과세기간	공제율(변경 전)	공제율(변경 후)
1월	1. 1. ~ 12. 31.	과세기간 세액의 6.4%	과세기간 세액의 4.6%
3월	1. 1. ~ 12. 31.	과세기간 세액의 5.2%	과세기간 세액의 3.8%
6월	7. 1. ~ 12. 31.	과세기간 세액의 3.5%	과세기간 세액의 2.5%
9월	7. 1. ~ 12. 31.	과세기간 세액의 1.7%	과세기간 세액의 1.3%

- ※ 2025년 이후 연납 공제율 3%로 변경(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2항 참고)
- 협조사항
 - 【붙임 2】 방송안을 참고하여 마을방송 실시
 - 기타문의는 하동읍사무소 재무부서(☎055-880-6031)로 문의

민원 부서

1.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

(황소라 880-6023)

-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시 방문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
 - 신분증 종류: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),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가능,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불가), 여권, 장애인등록증 등
- 위임 업무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, 위임자 자필로 작성된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(신분증 사본) 지참하여 방문
 -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필수 지참(**신분증 사본 불가**)
-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가능한 업무
 - 전입신고: 전입하려는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
 - 인감 신규등록 및 변경: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(인감증명서는 전국 발급 가능)

2.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협조

(이준섭 880-6024)

- 관련근거: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주요내용
 -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, 민원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,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
 - 인감 제작·보관·신고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
 -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법적 분쟁 예방
- 협조사항: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

여 백

【붙임 1】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무료검사 대상 안내

[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기존 우선순위대상자(무료PCR검사)에 대한 변경사항]

- 중단시기: 2024. 01. 01.(월)~
- 필요시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
 - *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

1.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

- 보건소 선별진료소 : 12.31.(일) 마지막 운영

	기존		변경 후(' 24.1월~)
보건소	평일	9시 ~ 16시 (점심시간 12~ 13시)	미운영
	주말 및 공휴일	9시 ~ 14시 (점심시간 12~ 13시)	

2. 기존 우선순위검사대상자(무료PCR검사)에 대한 변경사항

	(현재)	(개편) ' 24.1월~	
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 질환자면역저하자	의료기관 (선별진료소) ▶ 무료 PCR검사	일반 의료기관 ▶ 무료 PCR검사 * PCR검사 본인부담금(30~60%) 국비 지원 지속	
60세 이상인 자	보건소 선별진료소 ▶ 무료 PCR검사		
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·보호자(간병인)			▶ 먹는치료제 대상군(상동) ▶ 응급실·중환자실 입원환자, △ 고위험 입원환자, △ 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, 요양시설 입소자 : 무료 PCR검사 * PCR검사 본인부담금(20%) 국비 지원 * 고위험 입원환자 : 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, 장기이식 병동 입원·전실 시,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- 위 대상자의 보호자(간병인) : 무료 PCR검사 * 건보 한시 적용(본인부담 50%) 및 국비 지원
고위험시설 종사자			▶ 상기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·보호자(간병인) :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(RAT) 활용 *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
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			▶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(RAT) 활용 *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

참고2

'24.1.1일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 내용

구분	기존	변경 * '24.1.1.~주의 하향시까지
먹는치료제 대상군*	의료기관*에서 검사 시 *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- PCR 무료 - RAT 50% 본인 부담	⇨ 좌동
60세 이상인 자	보건소에서 검사 시 - PCR 무료 의료기관*에서 검사 시 *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- PCR 무료 - RAT 50% 본인 부담	⇨ 의료기관*에서 검사 *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- PCR 무료 - RAT 50% 본인 부담
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	보건소에서 검사 시 - PCR 무료 의료기관*에서 검사 시 *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- PCR 20% ¹⁾ - RAT 50% 본인 부담 ²⁾	⇨ 의료기관*에서 검사 *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- PCR 무료 ¹⁾ - RAT 50% 본인 부담 ²⁾
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	보건소에서 검사 시 - PCR 무료	⇨ 의료기관*에서 검사 *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- PCR 무료 ³⁾ - RAT 본인 부담
고위험시설 종사자	보건소에서 검사 시 - PCR 무료	⇨ 의료기관에서 검사 - PCR, RAT 본인 부담
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	보건소에서 검사 시 - PCR 무료	⇨ 의료기관에서 검사 - PCR, RAT 본인 부담

* (먹는치료제 대상군)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

1) ▲응급실·중환자실 입원환자, ▲고위험 입원환자, ▲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,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
 * 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, 장기이식 병동 입원·전실 시,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

2) 응급실·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(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인부담)

3) ▲응급실·중환자실 입원환자, ▲고위험 입원환자, ▲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,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(간병인)에 한함(그 외 환자의 보호자(간병인)은 본인부담)

홍보방송안 (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)

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

읍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

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입니다.

자동차세를 연납하면 4.6%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동이체 신청자께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.

읍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자동차세를 연납하시고
세금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은 읍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.

감사합니다.